

UNCITRAL 仲裁規則 改正草案 內容의 分析과 方向檢討*

Analysis of Deliberations by UNCITRAL Working Group on the
Draft Revised Version of UNCITRAL Arbitration Rules

강 병 근**
Pyoung-Keun Kang

〈목 차〉

- I. 서 론
- II. 중재판정부 운영의 기본 원칙 및 법적 근거
- III. 중재인 선정
- IV. 중재인에 대한 기피
- V. 중재인 대체 및 그 효과
- VI. 중재개시 및 쟁점 정리
- VII. 입증
- VIII. 중재판정
- IX. 결 론

주제어 : 국제무역법위원회, 중재규칙, 투자자-국가 중재, 모델중재법, 중재비용

* 이 연구는 고려대학교 특별연구비에 의하여 수행되었습니다.

** 고려대학교 교수

I. 서론

UNCITRAL(United Nations Commission on International Trade Law)의 중재실무작업반(Working Group II : WG II)은 2006년 1월 뉴욕에서 개최된 제44차 회의에서 모델중재법(UNCITRAL Model Law on International Commercial Arbitration) 개정안과 뉴욕협약 제2조 제2항 및 제7조 제1항과 관련한 해석 선언초안에 대한 검토를 모두 마쳤다.¹⁾ 이 때 WG II는 향후 작업 대상으로서 2006년 제정 30년을 맞이한 UNCITRAL Arbitration Rules(이하 1976년 중재규칙)에 주목하였다.²⁾ 2006년 6월 뉴욕에서 개최된 제39차 UNCITRAL 본 회의에서 UNCITRAL은 WG II가 1976년 중재규칙의 개정을 우선해서 다루도록 요청하였다.³⁾

WG II는 2006년 9월 비엔나에서 개최된 제45차 회의에서 1976년 중재규칙 전 규정을 일람하였고,⁴⁾ 2007년 2월 뉴욕에서 개최된 제46차 회의부터 사무국의 개정초안을 중심으로 1976년 중재규칙 제1조부터 제20조까지의 조문을 검토하였으며⁵⁾, 2007년 9월부터 비엔나에서 개최된 제47차 회의에서는 제21조부터 제37조까지의 조문을 검토하였다.⁶⁾

우리나라는 건국 이후 적극적으로 외국자본을 유치하면서 외국에 투자한 우리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여러 형태의 양자투자보장조약(Bilateral Investment Treaties: BIT)을 체결하였다. 현재 우리나라는 투자와 무역을 결합하여 2004년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 FTA)을 체결한 이후 다수의 FTA를 추진하고 있다. 이들 BIT 혹은 FTA 규정에 근거한 투자자-국가 중재의 절차규칙으로 1976년 중재규칙을 선택할 수 있기에 1976년 중재규칙의 개정논의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⁷⁾

아울러, 우리나라의 유일한 중재기관인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규칙에서도 1976년 중재규칙과 유사한 규정을 다수 발견할 수 있다.⁸⁾ 1976년 중재규칙 개정초안과 관련하여, 국

1) 뉴욕협약은 「외국 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the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Foreign Arbitral Awards)」을 말하며 우리나라에 대해서 1973년 05월 09일 (조약 제471호) 발효하였다.

2) Report of Working Group II (Arbitration and Conciliation) on the work of its forty-fourth session, A/CN.9/592, paras. 90-93. (이하 제44차 WGII 보고서)

3) Official Records of the General Assembly, Sixty-first Session, Supplement No. 17 (A/61/17), para. 184.

4) Report of Working Group II (Arbitration and Conciliation) on the work of its forty-fifth session, A/CN.9/614. (이하 제45차 WGII 보고서)

5) Report of Working Group II (Arbitration and Conciliation) on the work of its forty-sixth session, A/CN.9/619. (이하 제46차 WGII 보고서)

6) Report of Working Group II (Arbitration and Conciliation) on the work of its forty-seventh session, A/CN.9/641. (이하 제47차 WGII 보고서)

7) FTA의 경우, 한국-칠레 FTA 제10.24(1)조; 한국-싱가포르 FTA 제10.19(3)조; 한국-EFTA FTA 제16(2)조; 한미 FTA 제11.16(3)조. 이들 조약문에 대한 사항은 외교부 사이트 참조. (<http://www.fta.go.kr/> 2008년 1월 30일 검색)

8) 대한상사중재원 「중재규칙」 및 「국제중재규칙」은 현 1976년 중재규칙의 영향을 많이 받은 것처럼 여겨진다. 이들 규칙에 대해서 대한상사중재원의 「자료실」 참조. (http://www.kcab.or.kr/servlet/kcab_kor/medsharebrd/1000?sb_cls=1&sNum=1&dNum=0&pageNum=5&subNum=2 2008년 1월 30일 검색)

내의 선행연구로는 2006년 말까지 WG II의 개정작업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한 경우가 있다.⁹⁾ 이에 WG II에서 제1회독을 마친 1976년 중재규칙 개정초안의 주요 논점을 살펴봄으로써 우리나라의 중재관련 법과 실무를 보다 국제수준에 부합하도록 하는 계기로 삼을 수 있을 것이다.¹⁰⁾

II. 중재판정부 운영의 기본 원칙 및 법적 근거

1. 제1조

(1) "parties to a contract"

WG II는 제45차 회의에서 현재의 1976년 중재규칙 제1조 제1항의 "in relation to that contract"가 중재에 회부되는 분쟁의 유형을 제한하기에 모델중재법 제7조의 "in respect of a defined legal relationship, whether contractual or not" 처럼 제한을 두지 않는 규정으로 대체하는 것에 대해서 논의하였다.¹¹⁾ 제46차 회의에서는 1976년 중재규칙 적용범위의 모호성을 피하고, 중재에 제기되는 분쟁의 유형을 제한하지 않도록 "to a contract", "in relation to that contract"를 삭제하기로 하였고,¹²⁾ 적용범위를 넓게 규정하고 국제중재분야의 발전에 교육적 효과를 기대하면서, 뉴욕협약과 모델중재법에서도 활용하고 있는 "in respect of a defined legal relationship, whether contractual or not"을 추가하기로 하였다.¹³⁾

(2) 서면성

WG II는 제45차 회의에서 당사자의 중재합의와 그 변경사항에 대해서 서면성(in writing)을 요구할 것인지의 여부에 대해서 논의하였다.¹⁴⁾ 1976년 중재규칙에서 서면성 요건을 삭제하자는 쪽은 중재합의의 형식에 관한 사항은 준거법에서 다루어야 할 사항이라는 점, 1976년 중재규칙이 모델중재법과 보조를 맞추면서 국제중재를 일치시키는데, 최근 개정된 모델중재법에서는 형식요건을 대폭 완화한 점, 1976년 중재규칙에서 서면성 요건을 그대로 둘 경우, 국내법상 서면성 요건을 삭제한 국가에서 문제를 야기할 것이라는 점, 1976

9) 이강빈, "UNCITRAL 중재규칙 개정안의 내용과 쟁점에 관한 연구", 『중재연구』, 제17권 제2호, 한국중재학회, 2007.8.

10) 본문에서 언급되는 조문들은 제45차 내지 제48차 UNCITRAL WGII 회의까지 논의된 사항으로서 자세한 조문의 규정사항은 해당 WG II 회의 자료들을 참조하시오. (http://www.uncitral.org/uncitral/en/commission/working_groups/2Arbitration.html, 2008년 1월 30일 검색)

11) 제45차 WGII 보고서, para. 32.

12) 제46차 WGII 보고서, para. 21.

13) 제46차 WGII 보고서, paras. 22-24.

14) 제45차 WGII 보고서, para. 27.

년 중재규칙에 서면성 요건을 유지한다면, 이 요건을 정의해야 하는데, 이러한 정의 규정은 통상적인 중재규칙의 적용범위를 초월하게 될 것이라는 점, 모델중재법 제19조에서는 “Subject to the provisions of this Law, the parties are free to agree on the procedure to be followed by arbitral tribunal in conducting the proceedings.”라고 하여 절차와 관련하여 당사자들의 서면동의를 요구하지 않고 있기에, 1976년 중재규칙의 서면성 요건은 모델중재법의 요건을 초과하는 것이라는 점, 아울러, 서면성 요건의 충족 여부, 충족 방식과 관련하여 상당히 많은 소송이 있었다는 점, 서면성 요건이 중재합의에 적용되는지 아니면 1976년 중재규칙 적용에 관한 당사자의 합의에 적용되는지의 여부가 명확하지 않은 점을 제시하였다.¹⁵⁾ 제46차 회의에서 WG II는 서면성 요건에 대해서 다시 검토할 수 있다는 조건 하에 제1조에서 서면성 요건을 삭제하기로 하였다.¹⁶⁾

(3) 신·구 1976년 중재규칙의 적용

WG II는 제45차 회의에서 1976년 중재규칙 규정을 개정하면, 어떠한 1976년 중재규칙이 적용되도록 할 것인가에 대해서 논의하였다. 사무국의 수정초안 제1항의 2에서는 가장 최신의 규칙에 따라서 분쟁해결을 원하는 쪽과, 중재합의 당시에 있었던 규칙이 적용되도록 하여 명확성을 원하는 쪽의 견해를 모두 반영하였다.¹⁷⁾

2. 표준중재조항

(1) “arising out of or relating to this contract”

WG II는 제1조에서 “contract”를 언급하지 않기로 하였지만, 계약의 분쟁해결규정으로 활용되는 표준중재조항에서 “contract”에 관한 사항을 삭제한다면 “the breach, termination or invalidity thereof” 부분도 삭제해야 하는데, 이 경우 중재합의의 준거법에서 어느 정도 중재합의의 가분성을 인정하느냐에 따라서 예상하지 못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contract”에 관한 규정을 그대로 두자는 지지가 많았다.¹⁸⁾

(2) “as at present in force”

제1조 제1항에 따라서 어느 1976년 중재규칙이 적용될 것인지가 결정될 것이기에 “as at present in force” 구절을 삭제하기로 하였다.¹⁹⁾

15) 제46차 WGII 보고서, paras. 28-29.

16) 제46차 WGII 보고서, para. 31.

17) A/CN.9/WG.II/WP.147, para. 9.

18) 제45차 WGII 보고서, para. 36.

19) 제46차 WGII 보고서, para. 39.

(3) 표준중재조항에 추가될 수 있는 사항

(c) 호에서 특정 “country” 만 중재지로 지정하면 중재지가 명확하지 않고, 해당 country 가 중재절차와 관련해서 둘 이상의 준거법을 갖는 경우, 해당 country 내의 중재지 지정이 법률상 중요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고, “town or country”를 “town and country”로 하자는 제안이 있었다.²⁰⁾

3. 총칙 - 제15조

(1) 제1항

중재판정부가 공정하고 효율적인 분쟁해결 절차를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1976년 중재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기한을 연장하거나 단축할 권한을 갖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할 것인지에 대해서,²¹⁾ WG II는 제1항의 마지막 문장에서 그러한 권한을 부여하면서도, 당사자들이 전반적으로 합의한 절차진행기간에 대해서는 당사자와 협의 없이 수정할 수 없도록 하였다.²²⁾

(2) 제4항

제46차 회의에서 WG II는 LCIA(London Court of International Arbitration) 규칙 제22.1조 (h)에서처럼 일방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서, 1인 이상의 제3자가 신청당사자와 서면으로 동의하면, 중재판정부가 제3자를 당사자로서 중재에 참여하도록 허가하고, 그 이후 모든 관련 당사자에 대해서 단일한 확정중재판정 혹은 개별 중재판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할 것인지에 대해서 논의하였다. 제3자의 경우, LCIA 제22.1조 (h)에서처럼, 우선 중재 참가에 동의해야 한다는 점을 명시적으로 규정해야 한다는 견해가 있었고, 제3자가 어느 쪽 당사자로서 참가할 지는 여러 경우가 있기에 이러한 상황을 포섭할 수 있도록 가급적 탄력적인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는 견해가 있었다. WG II는 제3자의 중재참가와 관련해서 다양한 의견이 개진됨에 따라서, 제3자의 중재참가 빈도 및 이와 관련한 각 중재기관의 경험을 더 수집하기로 하였다.²³⁾

사무국이 관련 중재기관으로부터 협조 받은 사항에 따르면,²⁴⁾ ICC(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의 경우, 제3자가 서명한 중재합의를 근거로 해서 중재신청서가 제출되고, 피신청인이 새로운 당사자를 상대로 청구를 제기하는 경우, 피신청인의 요청이 있으면 제

20) 제46차 WGII 보고서, para. 41.

21) A/CN.9/614, paras. 41-46; 제46차 WGII 보고서, paras. 134-136.

22) 제46차 WGII 보고서, para. 136; A/CN.9/WG.II/WP.147/Add.1, para. 6.

23) 제46차 WGII 보고서, paras. 121-126.

24) A/CN.9/WG.II/WP.147/Add.1, para. 8.

3자를 새로운 당사자로 중재 참가하도록 허락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인다. LCIA의 경우, 제3자의 중재참가에 관한 LCIA 중재규칙 제22.1조 (h)가 1998년에 도입된 이래, 이에 따라서 약 10여 건의 사건에서 중재참가 신청이 있었지만, 인정된 적이 없었다고 밝혔다.²⁵⁾ ASA(Swiss Arbitration Association)는 스위스 중재규칙 제4조 제2항에서와 같이 중재판정부가 당사자 전원과 협의하고 적용되는 모든 관련 상황을 고려해서 제3자의 중재참가 신청 여부를 결정할 수 있지만, 스위스 중재규칙 제4조 제2항에 따라서 중재참가결정이 내려진 바가 없다고 한다.²⁶⁾

4. 중재지 - 제16조

제46차 회의에서 WG II는 법률적 의미의 중재지를 의미하는 용어로서 중재의 준거법 및 관할 법원을 결정하는 “seat of arbitration”과, 회의가 실제로 개최되는 장소를 의미하는 “location” 혹은 “venue” 를 구별해서 사용할 것인지의 여부, 또한, 이외에 법률적 의미의 중재지와 관련하여 어떠한 용어를 추가할 것인지에 대해서 논의하였다.²⁷⁾

현 제16조 제1항 과 제4항의 “place of arbitration” 대신에 “seat of arbitration”, “legal seat of arbitration”, “juridical seat of arbitration” 용어를 사용하고, 제2항과 제3항에서 물리적 혹은 지리적 의미의 중재지를 의미하는 용어로서 “location” 과 같은 어휘를 사용하는 제안이 있었다. 또한, LCIA 규칙 제16조 제1항과 같이 1976년 중재규칙 규정을 개정하자는 제안도 있었다.²⁸⁾ 제46차 회의에서 WG II는 모델중재법 규정과 같이 “place of arbitration”을 계속 사용할 것인지 아니면 다른 용어를 사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결론을 내

25) LCIA 중재규칙 제22.1조 (h)는 다음과 같다. “Unless the parties at any time agree otherwise in writing, the Arbitral Tribunal shall have the power, on the application of any party or of its own motion, but in either case only after giving the parties a reasonable opportunity to state their views: (h) to allow, only upon the application of a party, one or more third persons to be joined in the arbitration as a party provided any such third person and the applicant party have consented thereto in writing, and thereafter to make a single final award, or separate awards, in respect of all parties so implicated in the arbitration.(당사자들이 언제라도 문서로 달리 합의하지 않으면, 중재판정부는 당사자들이 견해를 표명할 수 있는 상당한 기회를 부여한 후, 당사자의 신청을 받거나 스스로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해서 권한을 갖는다, (아) 당사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리고 1인 이상의 제3자와 신청 당사자가 중재 참가에 대해서 서면으로 동의하는 경우, 제3자가 당사자로서 중재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으며, 그 후 중재에 관여된 모든 당사자에 대하여 단일 확정 판정을 내리거나 개별 판정을 내릴 수 있다.필자 번역)”

26) 스위스 중재규칙 제4조 제2항은 다음과 같다. “Where a third party requests to participate in arbitral proceedings already pending under these Rules or where a party to arbitral proceedings under these Rules intends to cause a third party to participate in the arbitration, the arbitral tribunal shall decide on such request, after consulting with all parties, taking into account all circumstances it deems relevant and applicable.(제3자가 이 규칙에 따라서 계속 중인 중재절차에 참여하는 것을 요청하거나, 이 규칙에 따른 중재절차의 당사자가 제3자가 중재에 참여하도록 하려는 경우, 중재판정부는 모든 당사자와 협의 후, 관련성이 있고 적용가능한 모든 상황을 고려하여 그러한 요청에 대해서 결정을 내려야 한다.필자번역)”

27) 제46차 WGII 보고서, paras. 137-138.

28) 제46차 WGII 보고서, paras. 139-140.

리지 못하였다. 사무국이 제시한 수정초안 제1안의 제1항은 법률적 의미의 중재지에 관한 현 제16조 제1항과 제4항을 결합한 것이고, 제2항은 물리적 의미의 중재지에 관한 제2항과 제3항을 결합한 것이다. 제2안은 LCIA 중재규칙 제16조를 본받아서 작성한 것이다.²⁹⁾

5. 준거법 - 제33조

WG II는 중재판정부가 분쟁의 실체에 적용해야 할 법에 관하여 A/CN.9/WG.II/WP.145/Add.1에서 제33조 제1항으로서 제시한 두 가지 안을 고려하였다.³⁰⁾ 제1안에 대해서 WG II는 “law” 대신 “rules of law”를 사용하기로 합의하였다.³¹⁾ 제2안과 관련해서, 당사자가 준거법을 결정하지 못한 경우, 모델중재법 제28조 제2항과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동일한 방식을 1976년 중재규칙에서도 채택하자는 제안이 있었다.³²⁾ 제2안의 Variant 1에 따르면, 중재판정부는 준거법 결정에 활용될 국제사법 규칙을 선택해야 할 의무를 추가로 부담하게 된다. Variant 1에 비해서 더 많은 지지를 받은 Variant 2에 따르면 중재판정부는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유엔 협약(United Nations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국제사법통일기구국제상사계약원칙(Unidroit Principles of International Commercial Contracts), ICC가 채택한 문서로서 Incoterms 나 Uniform Customs and Practices for Documentary Credit와 같은 문서, 또는 *lex mercatoria* 를 직접 적용하기로 결정할 수 있다.³³⁾ 사무국은 제1항에 대한 논의를 반영하여 수정 초안을 제시하였다.³⁴⁾

6. 중재 대리 - 제4조

(1) 자신이 선정한 자 : persons of their choice

당사자들이 중재절차 중 언제든지 어느 중재대리인을 출석하도록 할 것인지는 전적으로 자신들의 재량사항이라고 오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제4조 첫 문장의 “persons of their choice” 구절을 “persons chosen by them”으로 대체하자는 제안이 지지를 받았다.³⁵⁾

(2) 대리권의 존재/범위

제4조에서 중재대리인으로 선임된 자가 당사자 혹은 중재판정부에 대해서 자신의 중재

29) A/CN.9/WG.II/WP.147/Add.1, para. 11.

30) 제47차 WGII 보고서 para. 106.

31) 제47차 WGII 보고서 para. 107; A/CN.9/WG.II/WP.149, para. 61.

32) 제47차 WGII 보고서 para. 109; A/CN.9/WG.II/WP.149, para. 62.

33) 제47차 WGII 보고서 para. 110.

34) 제47차 WGII 보고서 para. 112; A/CN.9/WG.II/WP.149, para. 62.

35) 제46차 WGII 보고서, para. 63; A/CN.9/WG.II/WP.147, para. 26.

대리권의 내용을 고지하도록 할 것인지와 관련해서, 중재대리권의 존부 여부만 고지할 사항인지, 아니면 중재대리권의 범위도 포함시킬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³⁶⁾ WG II는 중재판정부 혹은 일방 당사자의 요청을 통해서 중재대리권에 관한 정보가 제공되도록 규정하기로 하였다.³⁷⁾

(3) 서면성

WG II는 당사자와 중재판정부간 교신에 관한 사항 제2조와 마찬가지로 제4조에서 교신의 서면성("in writing") 구절을 삭제하기로 합의하였다.³⁸⁾

7. 중재인 선정기관 지정 및 중재인의 선정 - 제4조의 2

(1) 기본 원칙

제46차 회의에서 WG II는 당사자들이 현재의 개정안에서 정한 경우만 아니라 중재절차 중 언제든지 중재인 선정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비기관 중재와 관련해서 1976년 중재규칙을 사용하는 당사자에게 중재인선정기관이 수행하는 역할의 중요성을 명시하며, 1976년 중재규칙에서 중재인선정기관과 지정기관이 각기 다른 역할을 갖도록 규정하는데 합의하였다.³⁹⁾

규정 앞부분에서 "Secretary-General of the PCA(PCA 사무총장)" 구절을 "Secretary-General of the Permanent Court of Arbitration at The Hague(헤이그 소재 상설중재재판소 사무총장)"로 정의한 후, "Secretary-General of the PCA" 구절을 초안 규정에서 사용하자는 제안이 지지를 받았다.⁴⁰⁾

(2) 제1항

사무국은 당사자들이 중재인선정기관에 대해서 합의하지 못하면, 당사자들이 PCA 사무총장에 대해서 다른 중재인 선정기관을 지정하도록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갖도록 하면서, 동시에 PCA 사무총장이 적절하다고 생각하면, 스스로 다른 중재인선정기관을 지정하는 초안규정을 제시하였다.⁴¹⁾

36) 제46차 WGII 보고서, para. 64.

37) 제46차 WGII 보고서, para. 67; A/CN.9/WG.II/WP.147, para. 28.

38) 제46차 WGII 보고서, para. 68; A/CN.9/WG.II/WP.147, para. 27.

39) 제46차 WGII 보고서, para. 69.

40) 제46차 WGII 보고서, para. 70.

41) 제46차 WGII 보고서, paras. 71-75; A/CN.9/WG.II/WP.147, para. 30.

(3) 제2항

현재의 1976년 중재규칙 제6조 및 제7조 규정에서는 당사자들이 중재인 선정기관에 대해서 합의하지 못한 경우, 또는 중재인 선정기관이 중재인 선정 신청을 받은 후 단독 중재인 선정과 관련해서는 60일, 3인 중재판정부의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중재인 선정을 거부하거나 선정할 수 없는 경우, PCA 사무총장에게 중재인 선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다. WG II는 1976년 중재규칙을 단순화하기로 함에 따라서,⁴²⁾ 제4조의 2에서는 중재인 선정기관에 대한 합의시한을 30일로 정하고, 이에 따라서 초안규정의 제6조와 제7조를 간단히 규정하기로 하였다.⁴³⁾

(4) 제3항

WG II는 일반원칙상 중재 당사자들이 중재인 선정기관에 대해서 중재인 선정과 관련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기로 합의하였다.⁴⁴⁾

(5) 제5항

WG II는 제5항에서 중재인 선정기관이 아니라 중재인이 되어 달라고 제안 받은 자가 당사자들에게 자신들의 적격성에 관하여 알려야 한다는 점을 명시하기로 합의하였다.⁴⁵⁾

Ⅲ. 중재인 선정**1. 중재인의 수 - 제5조**

제1안은 당사자들이 1인의 중재인에 합의하지 못하면 3인의 중재인을 선임하도록 하는 것으로서 현재의 제5조 규정에 가장 근사하고, 제2안은 소액 사건에서 3인 중재인의 선임을 강제하지 않도록 제안된 것으로서, 당사자들이 중재인의 수에 대해서 사전에 합의하지 못하면, 1인 혹은 3인의 중재인이 선정되도록 요청하되, 그러한 요청이 없으면 1인의 중재인이 선정되도록 하였다. 이 규정이 탄력성 면에서 지지를 받았다.⁴⁶⁾

A/CN.9/WG.II/WP.145에서 제시하고 있는 개정초안 제5조 제2항에서는 당사자들이 1인 혹은 3인 이외의 중재인 수에 합의하도록 허용하고 있지만 당사자들이 중재판정부 구성방

42) 제46차 WGII 보고서, para. 69.

43) A/CN.9/WG.II/WP.147, para. 31.

44) 제46차 WGII 보고서, para. 76; A/CN.9/WG.II/WP.147, para. 32.

45) 제46차 WGII 보고서, para. 78; A/CN.9/WG.II/WP.147, para. 33.

46) 제46차 WGII 보고서, paras. 79-82; A/CN.9/WG.II/WP.147, para. 35.

식에 대해서 합의하지 못하면 중재인 선정 기관이 관여해야 하기에 이 규정을 중재인 선정에 관하여 새로이 제안된 제7조의 2로 옮기기로 하였다.⁴⁷⁾

2. 단독 중재인 선임 - 제6조

현 제6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사항이 개정초안 제4조의 2에 포함되었기에, 제6조 제1항과 제2항을 합쳤고, 제6조 제4항의 내용은 개정초안 제4조의 2 제5항에서 다루고 있기에 삭제하는 수정 초안이 제시되었다.⁴⁸⁾

3. 3인 중재인 선임 - 제7조

개정초안 제4조의 2에서 현 제7조 제2항 (b)호에서 규정하는 사항을 포함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서, 제7조 제2항 규정을 단순화시킨 수정 초안을 사무국이 제시한 바 있다.⁴⁹⁾

4. 제7조의 2

(1) 다수당사자 중재 시 중재인의 선임에 관한 원칙

제45차 회의에서 WG II는 다수당사자 중재에서 중재인을 선정하는 방식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기로 하였고,⁵⁰⁾ 다수의 신청인 혹은 피신청인들이 반대하지 않는 한, 다수의 신청인 혹은 피신청인이 공동으로 중재인을 선정하기로 하는 취지의 개정초안 제7조의 2에 대해서 전반적인 지지가 있었다.⁵¹⁾

(2) 제1항

제1항의 취지는 개정초안 제6조와 제7조에서 1인 중재인 혹은 3인 중재인으로 된 중재판정부를 구성하도록 명시하고 있는 점 그리고, 당사자들이 2인 중재인으로 된 중재판정부를 구성하기로 하는 경우처럼 1인 혹은 3인이 아닌 다른 수의 중재인으로 된 중재판정부를 구성하기로 합의한 경우 그러한 중재판정부를 구성하는 방식을 결정하도록 하였다.⁵²⁾

47) 제46차 WGII 보고서, para. 83; A/CN.9/WG.II/WP.145, para. 44; A/CN.9/WG.II/WP.147, para. 36.

48) A/CN.9/WG.II/WP.147, para. 38.

49) A/CN.9/WG.II/WP.147, para. 40.

50) A/CN.9/614, paras. 62-63.

51) 제46차 WGII 보고서, para. 86.

52) 제46차 WGII 보고서, para. 83; A/CN.9/WG.II/WP.147, para. 42.

(3) 제3항

제3항의 취지는 다수당사자 중재에서 중재판정부가 구성되지 않는 경우, 중재인선정기관이 개입해서 중재판정부를 구성하는 권한을 넓게 인정하려는 것이다. 이 때, 다수 당사자들은 자기 측 중재인을 선정하는 권한을 갖지만, 중재인 선정기관은 이미 선정된 중재인을 해임하거나, 어느 쪽 다수 당사자측이 합의하여 선정한 중재인을 재선임할 수 있다.⁵³⁾ 한편, 중재판정부 구성과 관련하여 당사자 전원이 중재인 선정기관에 대해서 의견을 개진할 권리를 갖는다는 점이 제4조의 2에서 규정하고 있지만, 이러한 일반 원칙을 이곳에서 다시 부연할 것인지의 여부에 대해서 제2회독에서 논의할 가능성이 있다.⁵⁴⁾ 아울러, 제3항에서 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할 것인지의 여부에 대해서도 추후 논의할 가능성이 있다.⁵⁵⁾

5. 중재인선정기관의 중재인 선임 - 제8조

제46차 회의에서 중재인 선정기관의 지정에 관한 개정초안 제4조의 2에서 현 1976년 중재규칙 제8조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기에 현 제8조를 삭제하기로 합의하였다.⁵⁶⁾

IV. 중재인에 대한 기피

1. 중재인의 고지의무 - 제9조

제45차 회의에서 WG II는 현 제9조를 독립성 및 공정성에 대해서 의심을 야기할 수 있는 사유를 고지할 의무가 지속적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모델중재법 제12조를 근거로 수정할 것인지의 여부에 대해서 논의하였다.⁵⁷⁾ 실무상 현 1976년 중재규칙만으로도 중재인의 고지의무는 계속적인 것으로 해석되지만, 명확성을 기하기 위하여 모델중재법 제12조 제1항과 유사한 규정을 두기로 합의하였다. WG II는 개정 초안 제9조의 본문 내용과 중재인의 고지사항에 대한 지침이 되는 문안을 채택하였다.⁵⁸⁾

53) 제46차 WGII 보고서, paras. 88-91.

54) A/CN.9/WG.II/WP.147, para. 44.

55) 제46차 WGII 보고서, para. 93; A/CN.9/WG.II/WP.147, para. 45.

56) 제46차 WGII 보고서, para. 94; A/CN.9/WG.II/WP.147, para. 46.

57) 제45차 WGII 보고서, para. 64.

58) 제46차 WGII 보고서, paras. 95-99; A/CN.9/WG.II/WP.147, para. 48.

2. 기피 사유 - 제10조

WG II는 개정초안 제10조의 내용을 채택하였다.⁵⁹⁾

3. 기피절차의 개시 - 제11조

현 제11조 제2항의 “shall be in writing” 구절은 개정초안 제2조에서 “서면성”을 제거하기로 한 바에 따라서 삭제되었고, 중재인 선정 절차와 관련해서 제7조의 2에 관한 사항이 개정초안 제11조 제3항에서 추가로 언급되었다.⁶⁰⁾

4. 기피신청에 대한 결정 - 제12조

WG II는 제1항에서 중재인 기피 신청 후 15일 이내에 다른 당사자가 기피에 동의하지 않고, 대상이 된 중재인이 사임하지 않으면, 기피신청을 한 당사자가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기피신청에 대한 결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데 합의하였으며,⁶¹⁾ 제2항에서, 중재의 사정상 당사자의 대체중재인 선정권을 박탈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다면, 중재인선정기관이 직접 중재인을 선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⁶²⁾

V. 중재인 대체 및 그 효과

1. 중재인의 대체 - 제13조

제2항에서 당사자들 이외에 중재인들도 중재인이 결원된 상태에서 중재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지 아니면 중재인 선정기관의 허락을 얻은 후에 그렇게 할 수 있는지가 분명하지 않을 수 있다. 이와 관련해서, 중재인들이 그러한 결정권한을 갖도록 함으로써 중재인이 제 역할을 수행하지 않고, 그러한 사정을 어느 당사자도 알지 못하는 경우를 규율할 수 있다는 견해가 있었다.⁶³⁾

59) 제46차 WGII 보고서, para. 100; A/CN.9/WG.II/WP.147, para. 50.

60) A/CN.9/WG.II/WP.147, para. 53.

61) 제46차 WGII 보고서, para. 102; A/CN.9/WG.II/WP.147, para. 55.

62) 제46차 WGII 보고서, paras. 103-105.

63) 제46차 WGII 보고서, para. 109.

2. 중재인 대체시 심리 재개 여부 - 제14조

제45차 회의에서 스위스 국제중재규칙 제14조와 마찬가지로, 중재인 대체 시, 중재판정부가 달리 결정하지 않으면 중재인 대체로 중단되었던 시점에서부터 중재절차가 재개하도록 규정하자는 제안이 있었다.⁶⁴⁾ WG II는 A/CN.9/WG.II/WP.145에 제시된 개정초안 제14조의 내용을 채택하였다.⁶⁵⁾

VI. 중재개시 및 쟁점 정리

1. 중재 개시 통지 - 제3조

(1) 제3항

1) (b) 호 및 (d) 호

(b)호에서, WG II는 중재통지서에서 당사자의 성명 및 주소 이외에 추가적인 연락사항도 포함할 수 있도록 “(b) The names and contact details of the parties;”로 수정하기로 합의하였으며, 이에 맞추어서 제45차 회의에서 합의한 중재통지에 대한 피신청인의 답변에 관한 제5항의 (b)도 “the full name and contact details of any respondent”로 규정하기로 합의하였다.⁶⁶⁾ (d)호에서, WG II는 1976년 중재규칙의 적용범위에 비계약적 성격의 분쟁도 포섭하도록 합의하였기에 중재통지서에서도 이 점을 반영하여 넓게 규정하기로 하였다.⁶⁷⁾

2) 중재통지서의 필수적 규정 사항

제45차 회의에서 중재통지서의 필수 기재사항이 너무 많으면 중재기관이 관여하지 않는 “비기관 중재”에서 이를 제대로 기재하지 못한 중재통지서의 처리가 특히 문제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⁶⁸⁾ 이와 관련해서, 규정 자체에 중재통지서에 포함될 내용을 일부 누락해도 중재판정부 구성에 영향이 없다는 점, 그리고 누락된 사항이 미치는 효과는 중재판정부가 결정할 사항이라는 점을 명기하자는 제안이 있었다.⁶⁹⁾ 사무국은 수정초안 제3조

64) 제45차 WGII 보고서, para. 75.

65) 제46차 WGII 보고서, para. 113; A/CN.9/WG.II/WP.147, para. 59.

66) 제46차 WGII 보고서, para. 52; A/CN.9/WG.II/WP.147, para. 20.

67) 제46차 WGII 보고서, para. 54; A/CN.9/WG.II/WP.147, para. 21.

68) 제45차 WGII 보고서, para. 54.

69) 제46차 WGII 보고서, para. 56.

제7항에서 불충분한 중재통지서의 효과에 관하여 LCIA 중재규칙 제5.4조와 호주국제상사 중재센터(Australian Centre for International Commercial Arbitration) 중재규칙 제4.5조를 근거로 한 규정초안과 중재통지서의 흠결여부가 중재판정부 구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취지의 규정을 제안하였다.⁷⁰⁾

(2) 제4항 (c)호

WG II는 신청인이 중재통지서에서 신청서도 함께 전달할 수 있도록 규정하자는데 합의 하였지만, 신청인이 중재통지서를 신청서의 일부로 할 것인지의 여부에 대한 결정을 제18 조에서 규정한 절차까지 지연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추후 더 논의하기로 합의하였다.⁷¹⁾

(3) 제5항

1) 규정신설의 배경

WG II는 제45차 회의에서 중재신청서가 중재통지서의 선택적 기재사항이기에 피신청인이 관할권, 신청, 혹은 반대신청 사항과 관련해서 입장을 표명할 기회를 갖지 않은 채 중재판정부가 구성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WG II의 다수 대표자들은 중재판정부 구성 및 신청인의 답변서 제출 이전에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중재통지에 대해서 입장을 표명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다면, 중재신청인과 피신청인 양 당사자의 권리 행사가 균형을 이루고, 당사자들이 중재절차 초기에 분쟁의 주요 쟁점을 정리할 수 있다는 입장에서 신청인의 중재통지와 그에 대한 피신청인의 답변에 관한 사항을 한 조문에서 규정하기로 하였다.⁷²⁾

2) 중재통지에 대한 답변의 강제 여부

중재통지에 대한 답변을 강제할 것인지의 여부와 관련해서, WG II는 제7항에서 중재통지에 대하여 답변하지 못할 때 발생하는 효과를 규정하고 있는 점에 주목하고, 제5항 내

70) A/CN.9/WG.II/WP.147, para. 24; LCIA 중재규칙 제5.4조는 다음과 같다. "The LCIA Court shall appoint the Arbitral Tribunal as soon as practicable after receipt by the Registrar of the Response or after the expiry of 30 days following service of the Request upon the Respondent if no Response is received by the Registrar (or such lesser period fixed by the LCIA Court). The LCIA Court may proceed with the formation of the Arbitral Tribunal notwithstanding that the Request is incomplete or the Response is missing, late or incomplete. A sole arbitrator shall be appointed unless the parties have agreed in writing otherwise, or unless the LCIA Court determines that in view of all the circumstances of the case a three-member tribunal is appropriate."; 호주국제상사중재센터 중재규칙 제4.5조는 다음과 같다. "If the Notice of Arbitration is incomplete or is not submitted in the required number ACICA may request the Claimant to remedy the defect within an appropriate period of time and may delay the date of commencement of the arbitral proceedings until such defect is remedied."

71) 제46차 WGII 보고서, para. 57; A/CN.9/WG.II/WP.147, para. 22.

72) 제45차 WGII 보고서, paras. 56-57.

지 제7항의 규정을 추후 더 논의하기로 합의하였다.⁷³⁾

3) 기한

A/CN.9/WG.II/WP.145에서 사무국이 제시한 개정초안 제5항에서는 중재통지에 대한 답변 기한을 30일로 정하고 있지만, 이 기간이 어느 경우에는 너무 짧을 수 있고, 1976년 중재규칙 제11조에서 중재인에 대한 기피신청 기한을 15일로 정하고 있는 점과도 일치하지 않는다는 지적에 대해서, WG II는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1976년 중재규칙 전체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한을 재검토하기로 합의하였다.⁷⁴⁾

2. 언어 - 제17조

WG II는 당사자들이 합의하여 중재절차에서 둘 이상의 언어를 사용할 수 있기에, 현 제17조와 표준중재조항에서 “or languages” 구절을 삭제하기로 합의하였다.⁷⁵⁾

3. 서면 통지 및 기한의 산정 - 제2조

(1) 우편연락장소

제2조 제1항의 “우편연락장소(mailing address)”에서 “mailing” 어휘를 삭제함으로써 우편연락장소와 전자우편(e-mail)주소를 모두 포함하도록 하자는 견해가 많은 지지를 받았다.⁷⁶⁾

(2) 전자적 교신 - 제1항의 2

전자적 방식에 의한 통지의 송달에 대해서 새로운 규정을 둘 것인지에 대해서⁷⁷⁾, 전통적인 통지 송달 방식, 신속한 송달의 중요성, 통지 발송 및 수령에 대한 기록의 필요성, 교신 수단에 대한 당사자들의 동의를 새로운 규정에서 언급할 필요가 있다는데 지지가 있었고, 제1항의 2 규정이 마련되었다. WG II는 제1항의 2 규정이 기존의 문서에서 사용하느 용어와 일관성을 갖도록 하는데 합의하였다.⁷⁸⁾

73) 제46차 WGII 보고서, para. 58; A/CN.9/WG.II/WP.147, para. 23.

74) 제46차 WGII 보고서, para. 59.

75) 제46차 WGII 보고서, para. 145; A/CN.9/WG.II/WP.147/Add.1, para. 13.

76) 제46차 WGII 보고서, para. 47.

77) 제45차 WGII 보고서, para. 39.

78) 제46차 WGII 보고서, para. 50.

4. 중재신청서 - 제18조

(1) 제1항

WG II는 계약서와 중재합의서 전달에 관한 규정을 마련할 때 개정초안 제3조와 제18조를 상호 일치시키기로 합의하였다.⁷⁹⁾

(2) 제2항

WG II는 청구의 근거가 되는 법적 주장 혹은 법적근거에 관한 규정을 (e)호에서 다루기로 합의하였다.⁸⁰⁾ 개정초안 제18조 제2항의 마지막 문장은 신청서의 내용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면서도, 그러한 기준에서 벗어나는 경우에 대해서 엄격하게 규율하지 않도록 작성되었다.⁸¹⁾

5. 답변서 - 제19조

(1) 제2항

WG II는 개정초안 제18조에서 수정할 사항과 제19조를 일치시키기 위하여 제2항의 내용을 수정하기로 합의하였다.⁸²⁾

(2) 제3항

제46차 회의에서 WG II는 제19조에서 상계에 관하여 규정하기로 한 점, 그리고 중재판정부가 일정한 요건 하에서 주 신청의 근거가 되는 계약의 적용 범위를 초과하여 반대신청 혹은 상계 및 여러 가지 다양한 경우에 대해서 판단할 권한을 갖는 점에 합의하였다. 이를 위하여, 제3항 제1안의 "arising out of the same legal relationship, whether contractual or not" 구절이 제안되었다. 한편, 반대신청의 경우, 처음신청과 실질적으로 긴밀히 결부된 경우만 허용되도록 해야 한다는 견해가 있었던 반면, 제1안 구절을 삭제하는 것이 아니면 신청과 반대신청 혹은 상계간의 연결성을 요건으로 하지 말고, 중재판정부의 재량사항으로 두자는 견해도 제시되었다. 신청과 반대신청 혹은 상계간의 연결은 일반적인 상사분쟁의 경우에 필요하겠지만, 국가가 결부된 투자분쟁의 경우에는 필요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견해에서 제2안이 제시되었다.⁸³⁾

79) 제46차 WGII 보고서, paras. 146-147; A/CN.9/WG.II/WP.147/Add.1, para. 15.

80) 제46차 WGII 보고서, paras. 149-151; A/CN.9/WG.II/WP.147/Add.1, para. 17.

81) 제46차 WGII 보고서, paras. 152-154; A/CN.9/WG.II/WP.147/Add.1, para. 18.

82) A/CN.9/614, paras. 93 and 94; 제46차 WGII 보고서, para. 156; A/CN.9/WG.II/WP.147/Add.1, para. 20.

83) 제46차 WGII 보고서, paras. 157-158;

또한, WG II는 스위스 중재규칙 제21조 제5항에서처럼 상계항변이 중재조항의 적용범위에 포함되지 않거나, 다른 중재합의 혹은 분쟁해결조항의 대상이 되더라도 이에 대해서 심리할 관할권이 있는지의 여부에 대해서 논의할 가능성이 있다.⁸⁴⁾

6. 중재판정부의 권한에 대한 이의제기 - 제21조

(1) 제1항

개정초안 제21조 제1항은 중재판정부가 권한의 존부 및 그 범위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할 수 있고 아울러 그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모델중재법 제16조 제1항 규정에 따라서 현 제21조 제1항과 제2항을 다시 작성한 것이다. 조문의 명료성을 위하여 "ipso jure" 대신 "of itself" 어휘를 사용하였다.⁸⁵⁾

(2) 제3항

WG II는 제45차 회의에서 현 제21조 제4항을 모델중재법 제16조 제3항에 맞추어서 수정하기로 합의하였다.⁸⁶⁾

7. 중재신청서 및 답변서의 변경·보완 - 제20조

제46차 회의에서 WG II는 별 이견 없이 개정초안 제20조를 채택하였으며, 중재합의(arbitration agreement)와 중재조항(arbitration clause)을 구별하지 않기로 결정함에 따라서, "arbitration agreement" 용어만 사용하기로 하였다.⁸⁷⁾

8. 추가 서면 - 제22조

WG II는 현 제22조와 동일한 규정으로 A/CN.9/WG.II/WP.145/Add.1에서 제시한 개정초안을 채택하기로 합의하였다.⁸⁸⁾

84) A/CN.9/WG.II/WP.147/Add.1, para. 22; 스위스 중재규칙 제21조 제5항은 다음과 같다. "the arbitral tribunal shall have jurisdiction to hear a set-off defence even when the relationship out of which this defence is said to arise is not within the scope of the arbitration clause or is the object of another arbitration agreement or forum-selection clause."

85) A/CN.9/614, para. 97; 제46차 WGII 보고서, para. 162; A/CN.9/WG.II/WP.147/Add.1, para. 26.

86) A/CN.9/614, paras. 97-102; 제46차 WGII 보고서, para. 164; A/CN.9/WG.II/WP.147/Add.1, para. 28.

87) A/CN.9/WG.II/WP.147/Add.1, para. 24.

88) 제47차 WGII 보고서 para. 19; A/CN.9/WG.II/WP.149, para. 7.

9. 제출 기한 - 제23조

WG II는 현 제23조와 동일한 규정으로 A/CN.9/WG.II/WP.145/Add.1에서 제시한 개정 초안을 채택하기로 합의하였다.⁸⁹⁾

10. 임시적 처분 - 제26조

(1) 제1항 내지 제4항, 그리고 제6항 내지 제9항

제1항 내지 제4항, 그리고 제6항 내지 제9항의 규정은 모델중재법 “Chapter IV A”의 임시적 처분 규정을 본 딴 것이다.⁹⁰⁾ WG II는 새로이 추가된 제5항과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제6항 내지 제9항에 “order referred to in paragraph (5)”를 추가하였다.⁹¹⁾

(2) 제5항

2006년 UNCITRAL은 임시적 처분 신청사항이 해당 처분의 대상이 된 당사자에게 사전에 알려질 경우 해당 처분의 취지를 상실하게 될 우려가 있다고 중재판정부가 판단하면 신청 당사자가 그 당사자에게 신청사항을 통지하지 않아도 사전명령을 내릴 수 있다는 취지로 모델중재법규정을 개정한 바 있다.⁹²⁾

WG II는 모델중재법 Chapter IV A Section 2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사전명령 (preliminary orders)”에 관한 규정을 1976년 중재규칙 개정초안에 포함시킬 것인지의 여부에 대해서 논의하였다.⁹³⁾ WG II는 중재판정부가 자신이 내린 임시적 처분의 취지를 저하시키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할 권한을 갖고 이러한 조치를 명령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하되, “사전명령(preliminary order)”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기로 하였다.⁹⁴⁾

(3) 제10항

제10항의 규정은 현 제26조 제3항과 일치하며, “an application for an order referred to in paragraph 5”는 제5항과 일치시키기 위하여 추가되었다.⁹⁵⁾

89) 제47차 WGII 보고서 para. 20; A/CN.9/WG.II/WP.149, para. 9.

90) 제47차 WGII 보고서 para. 46.

91) A/CN.9/WG.II/WP.149, para. 27.

92) 2006년 개정된 모델중재법의 “Chapter IV A”

93) 제47차 WGII 보고서 para. 53.

94) 제47차 WGII 보고서 para. 60; A/CN.9/WG.II/WP.149, paras. 28-29.

95) 제47차 WGII 보고서 para. 52; A/CN.9/WG.II/WP.149, para. 31.

Ⅶ. 입증

1. 증거 - 제24조

(1) 제목

WG II는 제25조에서 당사자가 지정한 감정 증인을 위시하여 증인에 관한 사항을 다루고, 제27조에서는 중재판정부가 지정한 감정인에 관한 사항을 다루는 점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제24조, 제25조, 그리고 제27조의 제목을 수정하자는 제안이 있었다.⁹⁶⁾ 현 제24조 및 제25조의 제목은 “Evidence and hearings”인데, 명확성을 기하기 위하여 제24조의 제목을 “Evidence” 그리고 제25조의 제목을 “Witnesses”로 하는 사무국의 수정 초안이 제시되었다.⁹⁷⁾

(2) 제2항

제47차 회의에서 WG II는 중재판정부가 당사자들에게 서류 요약본을 제출하도록 하는 것이 실무상 공통적이지 않기에 제2항을 삭제하기로 하였다.⁹⁸⁾

2. 심리 - 제25조

(1) 제목

제25조 규정이 감정 증인을 위시하여 당사자가 지정한 증인에게 적용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Witnesses”를 제목으로 하자는 사무국의 수정 초안이 제시되었다.⁹⁹⁾

(2) 제1항의 2

A/CN.9/WG.II/WP.145/Add.1에서 제시한 개정초안 제2항의 2에서는 중재판정부가 증인 신문 방식에 대해서 재량권을 갖고, 중재판정부에 대해서 증언한 중재당사자, 당사자의 임직원, 또는 주주는 1976년 중재규칙에 따라서 증인으로 취급되도록 하였다.¹⁰⁰⁾ 한편, 제2항의 2에서 “For the purpose of these Rules” 구절을 추가함으로써, 당사자의 증언을 금지하고 있는 국가의 경우, 개인이 증인으로 간주되지 않도록 하였고, 증인의 유형을 예시하지 않기로 하였다.¹⁰¹⁾ 사무국의 수정 초안에서 제2항 2를 제1항의 2로 위치 변경한 것은

96) 제47차 WGII 보고서 paras. 27, 61.

97) A/CN.9/WG.II/WP.149, para. 11.

98) 제47차 WGII 보고서 para. 22; A/CN.9/WG.II/WP.145/Add.1, para. 23.

99) A/CN.9/WG.II/WP.149, para. 16.

100) 제47차 WGII 보고서 para. 29.

증인 신문 방식과 증인 심리에 관한 중재판정부의 재량권을 먼저 기술한 후, 증인에 관한 세부 절차를 규정하자는 제안을 반영한 것이다.¹⁰²⁾ WG II는 수정초안 제15조 제2항에서 중재판정부의 감정인 지정 여부와 상관없이 독자적으로 당사자가 감정 증거를 제출할 권리가 있다는 점을 분명히 규정하기로 하였다.¹⁰³⁾

(3) 제2항

현 제25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15일 시한은 어떤 경우에는 너무 장기간이 될 수 있기에, 증인에 관하여 세부사항을 전달하는 시한을 삭제하자는 제안이 있었다.¹⁰⁴⁾

(4) 제4항

증인의 증언 중 다른 증인의 퇴정을 규정하고 있는 제4항의 제2문이 당사자가 증인으로서는 자신의 사안에 대해서 주장하는 경우를 차단하지 않도록 “save when the witness is a party to arbitration” 구절을 포함한 사무국의 수정 초안이 제시되었다.¹⁰⁵⁾

(5) 제5항

제5항에서 증인이 서명 진술서 형식으로 증거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할 뿐만 아니라 물리적으로 증인이 현존하지 않아도 구두진술을 할 수 있는 취지의 수정 초안이 제시되었다.¹⁰⁶⁾

3. 심리의 종결 - 제29조

WG II는 A/CN.9/WG.II/WP.145/Add.1에서 제시한 개정초안을 채택하기로 합의하였다.¹⁰⁷⁾

4. 감정인 - 제27조

(1) 제목

제27조의 원래 제목인 “Experts”에 “appointed by the arbitral tribunal”을 추가한 것은

101) 제47차 WGII 보고서 para. 32; A/CN.9/WG.II/WP.149, para. 19.

102) A/CN.9/WG.II/WP.149, para. 18.

103) 제47차 WGII 보고서 para. 61; A/CN.9/WG.II/WP.147/Add.1, para. 5.

104) 제47차 WGII 보고서 para. 34; A/CN.9/WG.II/WP.149, para. 21.

105) 제47차 WGII 보고서 para. 41; A/CN.9/WG.II/WP.149, para. 23.

106) 제47차 WGII 보고서 para. 43; A/CN.9/WG.II/WP.149, para. 24.

107) 제47차 WGII 보고서 para. 65; A/CN.9/WG.II/WP.149, para. 41.

중재판정부가 지정한 감정인을 위주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하기 위한 것이다.¹⁰⁸⁾

(2) 중재판정부 지정 감정인과 당사자 지정 감정인의 관계

중재판정부가 지정한 감정인을 신문하기 이전에 절차의 신속한 운영을 위하여 당사자 지정 감정인에게 쟁점 사항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규정을 추가할 것인지에 대해서 더 논의할 가능성이 있다.¹⁰⁹⁾

5. 일방 당사자의 해태 - 제28조

(1) 제1항

WG II는 A/CN.9/WG.II/WP.145/Add.1에서 제시한 개정초안 제28조 제1항의 “unless the respondent has submitted a counter-claim(반대 신청을 제출하지 않으면)”에 대해서 논의하였다. 위와 같이 수정하면, 중재통지서 제출 후 신청인이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청구가 철회되더라도, 반대신청이 제출되면 해당 중재절차를 종료할 수 없게 될 것이고, 그러한 경우, 중재판정부는 반대 신청만 처리해야 하는지의 여부가 문제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하여, 모델중재법 제25조와 같이 제1항에서 신청인이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와, 피신청인이 답변서를 제출하지 못하거나, 또는 신청인이 피신청인의 반대신청에 대해서 답변서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를 구분해서 규정하고,¹¹⁰⁾ 제1항 (b)호에 “without treating such failure in itself as an admission of the claimant’s allegations(답변서 미제출 자체를 신청인 주장에 대한 자백으로 간주하지 않고서)” 구절을 추가하기로 하였다.¹¹¹⁾

(2) 제3항

WG II는 개정초안 제28조 제3항의 “documentary evidence”와 제24조 제3항의 “documents, exhibits or other evidence”를 일치시키기 위하여 “documentary”를 “documents, exhibits or other”로 대체하는 수정 초안이 제시되었다.¹¹²⁾

108) 제47차 WGII 보고서 para. 61; A/CN.9/WG.II/WP.149, para. 33.

109) A/CN.9/WG.II/WP.149, para. 34.

110) 제47차 WGII 보고서 para. 62; A/CN.9/WG.II/WP.149, para. 36.

111) 제47차 WGII 보고서 para. 63; A/CN.9/WG.II/WP.149, para. 37.

112) 제47차 WGII 보고서 para. 64; A/CN.9/WG.II/WP.149, para. 39.

6. 이의 신청권의 포기 - 제30조

WG II는 모델중재법 제4조의 규정과 일치시키고 1976년 중재규칙의 개정초안 제30조의 내용을 더 잘 반영하기 위하여 제30조의 제목을 “waiver of right to object”로 수정하기로 합의하였다.¹¹³⁾

VIII. 중재판정

1. 의사결정 - 제31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중재판정부의 의사결정과 관련해서 첫 번째 방안(다수결방식)으로 제시된 사항은 다수결 요건을 취하고 있는 현 규정과 동일하다.¹¹⁴⁾ 두 번째 방안(의장중재인 결정방식)은 다수의견이 형성되지 않아서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3인 중재인으로 구성된 중재판정부가 다수의견을 형성하지 못하면 의장중재인이 마치 단독 중재인 처럼 의사결정을 하도록 하는 것이다.¹¹⁵⁾ 이 경우 중재판정 서명에 관한 현 제32조 제4항 규정을 수정해야 한다.¹¹⁶⁾ WG II의 상당수 대표들은 의장중재인 결정방식을 지지하였다.

사무국의 수정초안 제1항의 제1안은 모델중재법 제29조와 같이 당사자들이 합의하여 배제할 수 있도록 하면서 다수결방식을 규정하였고, 수정초안 제7조의 2에서 한 명 혹은 세 명이 아닌 다른 수의 중재인으로 중재판정부를 구성하기로 결정한 경우를 감안하여 “three arbitrators”를 “more than one arbitrator”로 대체하는 수정 초안이 제시되었다.¹¹⁷⁾ 제2안의 “Variant 1”은 다수 의견이 형성되지 않는 경우 의장중재인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이고, “Variant 2”는 당사자들이 의장중재인 결정 방식을 합의해서 추가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opt-in 방식)에만 의장중재인결정방식이 적용되도록 하였다.¹¹⁸⁾

2. 형식과 내용 - 제32조

(1) 제1항

WG II는 실무상 여러 가지 유형의 중재판정을 나열할 필요가 있는지의 여부 그리고

113) 제47차 WGII 보고서 para. 66; A/CN.9/WG.II/WP.149, para. 43.

114) A/CN.9/614, paras. 111-112.

115) A/CN.9/614, para. 108.

116) 제47차 WGII 보고서 para. 68.

117) 제47차 WGII 보고서 para. 76; A/CN.9/WG.II/WP.147, paras. 41-42; A/CN.9/WG.II/WP.149, para. 47.

118) 제47차 WGII 보고서 para. 75; A/CN.9/WG.II/WP.149, para. 48.

제1항의 중재판정 목록을 삭제할 것인지의 여부에 대해서 논의하였다.¹¹⁹⁾ WG II는 중재판정부가 중재절차 진행 중 각기 다른 쟁점에 대해서 판정을 내릴 수 있다는 점을 제1항에서 명기하기로 합의하면서, 제1항에서 “final”, “interim”, 또는 “interlocutory”와 같이 중재판정의 성격을 한정하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기로 합의하였다.¹²⁰⁾

(2) 제2항

1) “final and binding”

WG II는 “final and binding” 어휘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제2항의 제1문을 수정할 필요가 있는지의 여부에 대해서 논의하였다. 중재판정의 “final and binding” 측면은 중재판정부에 대해서는 중재판정이 내려진 후 해당 중재판정을 수정할 수 없다는 점, 당사자들에게 대해서는, 당사자들이 해당 중재판정에서 판단한 사항에 구속된다는 점, 법원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중재판정 취소가 정당한 경우를 제외하고, 법원이 해당 판정에 대한 불복신청을 수리하지 않아야 한다는 점을 의미하는데 일반적인 합의가 있었다.¹²¹⁾

2) 불복제소권의 포기

WG II는 1976년 중재규칙에 따라서, 당사자들은 중재판정에 대해서 불복하거나, 사안의 본안, 혹은 사실 또는 법적인 사항에 관하여 법원에 제소할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합의하였다. 그러나 개정초안에서 “review or recourse to any court or other competent authority”라고 하여 모델중재법 제34조에서 예외적인 경우에 인정되는 중재판정 취소의 소와 같이 당사자들이 중재판정취소를 청구하는 권리도 포기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견해가 있었다.

WG II는 준거법에서 허용하는 경우, 1976년 중재규칙에서 자동적으로 중재판정 취소의 소를 청구할 권리를 포기하도록 할 것인지의 여부를 명확히 하고자 하였다.¹²²⁾ 중재판정 취소를 포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ICC 중재규칙 제28.6조 그리고 LCIA 중재규칙 제26.9조와 같은 중재기관 중재규칙의 흐름이긴 하지만, 1976년 중재규칙은 이들과 다른 틀 속에서 운영되기에, 모델중재법 제3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과 같은 당사자의 권리를 보존해야 한다는데 다수가 동의하였다.¹²³⁾ 사무국은 예외적으로 당사자들이 합의한 경우에

119) 제47차 WGII 보고서 para. 78.

120) 제47차 WGII 보고서 para. 80; A/CN.9/WG.II/WP.149, para. 52.

121) 제47차 WGII 보고서 para. 81.

122) 제47차 WGII 보고서 para. 86.

123) 제47차 WGII 보고서 para. 87; ICC 중재규칙 제28.6조의 다음과 같다. “Every Award shall be binding on the parties. By submitting the dispute to arbitration under these Rules, the parties undertake to carry out any Award without delay and shall be deemed to have waived their right to any form of recourse insofar as such waiver can validly be made.”; LCIA 중재규칙 제26.9조는 다음과 같다. “All awards shall be final and binding on the parties. By agreeing to arbitration under these Rules, the parties undertake to carry out any award immediately and without any delay (subject only to Article 27); and the parties also waive

는 중재판정 취소의 소를 제기할 권리를 포기할 수 있지만, 그 이외에는 당사자들이 중재판정에 대해서 법원에 불복청구하지 못하도록 하는 취지의 수정 초안을 제시하였다.¹²⁴⁾

(3) 제4항

WG II는 중재지에 관한 개정초안 제16조 제4항과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중재지 이외의 장소에서 서명된 경우라도 해당 중재판정이 중재지에서 내려진 것으로 간주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기로 합의하였으며,¹²⁵⁾ 중재인 1인 혹은 3인 이외의 수로 중재판정부 구성하는 경우에 관한 수정초안 제7조의 2 규정과 일관성을 유지한다는 차원에서 “three arbitrators”를 “more than one arbitrator”로 대체하는데 합의하였다.¹²⁶⁾

(4) 제5항

WG II는 중재판정의 공개에 관한 두 가지 안에 대해서 논의하였다. 제1안은 당사자의 동의가 있을 때만 공개할 수 있는 현재의 1976년 중재규칙 규정과 일치하고 제2안은 당사자가 법률상 고지의무를 부담하는 경우를 추가하는 규정이다.¹²⁷⁾ 이 중 제2안이 많은 지지를 받았다. 제2안을 지지하는 쪽에서는 이 규정이 법원 혹은 다른 절차에서 판정을 고지할 필요가 있는 당사자를 더 많이 보호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당사자 권리의 범위를 더 명확히 제시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제2안에서 당사자가 법적 권리를 보호하고자 하거나, 이러한 권리를 추구하는 경우, 그리고 당사자가 법적 절차와 관련해서 판정문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를 더 잘 구별하기 위하여, “duty” 다음에 쉼표를 첨가하는 제안이 수락되었다.¹²⁸⁾ 사무국은 당사자 1인 혹은 소수의 개인(예, 회계사, 보험인, 사업동업자)에게만 중재판정문을 공개하는 경우처럼 합법적으로 특정해서 판정문을 공개할 수 있도록 수정 초안을 제시하였다.¹²⁹⁾

(5) 제7항

WG II는 제7항에서 중재판정부가 관련 국내법에 포함된 강행규칙을 준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한 제7항 규정이 필요하지 않다는 이유로 해당 규정을 삭제하는데 합의하였다.¹³⁰⁾

irrevocably their right to any form of appeal, review or recourse to any state court or other judicial authority, insofar as such waiver may be validly made.”

124) A/CN.9/WG.II/WP.149, para. 54.

125) 제45차 WGII 보고서 para. 90.

126) 제47차 WGII 보고서 para. 94; A/CN.9/WG.II/WP.149, para. 56.

127) 제47차 WGII 보고서 para. 95.

128) 제47차 WGII 보고서 para. 97.

129) A/CN.9/WG.II/WP.149, para. 57.

130) 제47차 WGII 보고서 para. 105; A/CN.9/WG.II/WP.149, para. 59.

3. 화해 및 종료 - 제34조

다수당사자 중재를 포섭하기로 한 결정에 따라서, WG II는 제1항의 “both parties”를 “the parties”로 대체하는데 합의하였고,¹³¹⁾ 제32조 제7항을 삭제하기로 결정함에 따라서 제3항에서 이를 반영하는 수정 초안을 제시하였다.¹³²⁾

4. 중재판정의 해석 - 제35조

다수당사자 중재를 포섭하기로 한 결정에 따라서, WG II는 제1항의 “either party”를 “a party”로 대체하는데 합의하였고,¹³³⁾ 제32조 제7항을 삭제하기로 결정함에 따라서 제2항에서 이를 반영하는 수정 초안을 제시하였다.¹³⁴⁾

5. 중재판정의 정정 - 제36조

제45차 회의에서 중재인의 서명이 누락되거나, 중재판정 일자 및 장소를 누락한 경우도 포괄할 수 있도록 제1항의 “any material error” 다음에 “or omission”을 추가하자는 제안이 있었다.¹³⁵⁾ 사무국은 WG II가 제32조 제7항을 삭제하기로 결정함에 따라서 제2항에서 이를 반영하는 수정 초안을 제시하였다.¹³⁶⁾ 중재판정 해석에 관한 수정 초안 제35조 제2항에서처럼 중재판정 정정과 관련해서도 시한을 두자는 제안이 있었다.¹³⁷⁾

6. 추가판정 - 제37조

WG II는 제2항에서 “without any further hearings or evidence” 구절을 삭제할지의 여부, 그리고 제2항에 따라서 중재판정부가 추가 심리나 증거 제출 없이 중재판정을 내릴 수 있는지의 여부에 대해서 논의하였다.¹³⁸⁾ 모델중재법 제33조 제3항과 제4항이 개정초안 제2항에서 다루는 것과 동일한 사항을 다루고 있기에 표준으로서 유용하다는 지적에 따라서,¹³⁹⁾ 사무국은 중재판정부가 필요하다고 여기는 경우 추가 심리를 열고, 추가 증거를 제

131) 제47차 WGII 보고서 para. 114; A/CN.9/WG.II/WP.149, para. 67.

132) A/CN.9/WG.II/WP.149, para. 69.

133) 제47차 WGII 보고서 para. 115; A/CN.9/WG.II/WP.149, para. 71.

134) A/CN.9/WG.II/WP.149, para. 72.

135) 제45차 WGII 보고서, para. 127.

136) A/CN.9/WG.II/WP.149, para. 75.

137) A/CN.9/WG.II/WP.149, para. 76.

138) 제47차 WGII 보고서 para. 117.

출하도록 하는 취지의 수정초안을 제시하였다.¹⁴⁰⁾ 또한, 사무국은 WG II가 제32조 제7항을 삭제하기로 결정함에 따라서 제3항에서 이를 반영하는 수정초안을 제시하였다.¹⁴¹⁾

IX. 결론

UNCITRAL 은 스스로 1976년 중재규칙을 평가하면서, 이 중재규칙이 지난 30여 년간 비기관 중재(소위 특별 중재 혹은 수시중재), 투자자-국가 중재, 국가-국가 중재, 중재기관이 관장하는 일반 상사 중재에서 빈번히 활용된 점을 강조하였다.¹⁴²⁾ UNCITRAL이 동 중재규칙의 개정작업에 착수한 것은 지난 10여 년 동안 투자자-국가 중재가 빈번해지면서 국제중재법 및 실무 분야의 변화가 급박했기 때문이다.

1976년 중재규칙은 그 동안 투자자-국가 분쟁 해결을 위한 중재규칙으로 사용되었는데, 투자자-국가 중재분야가 현재 발전하고 있기에 이것만 염두에 두고 1976년 중재규칙을 개정한다면 중재규칙으로서 탄력성을 상실하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으면서도 지난 제45차 이후 WG II 회의에서 투자자-국가 중재를 염두에 둔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WG II 회의에 옵서버로 참여하고 있는 국제지속가능개발연구소(International Institute for Sustainable Development: IISD) 등의 NGO는 국가가 결부된 중재절차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특별규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첫째, 제3조에서 중재통지서와 중재판정부구성에 관한 사항을 UNCITRAL 사이트 게시판에 게재하도록 한다. 둘째, 제15조 제3항에서 중재판정부가 접수하거나 발송한 모든 서류를 UNCITRAL 사이트 게시판에 공표하도록 한다. 셋째, 제15조 제4항에 따라서 중재판정부가 당사자 이외의 제3자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한다. 넷째, 제25조 제4항에 따라서 심리를 다중에게 공개하도록 한다. 다섯째, 제32조 제5항에 따라서 중재판정을 공표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¹⁴³⁾

IISD의 주장 이외에도, 1976년 중재규칙의 여러 규정들이 투자자-국가 중재와 관련해서 언급되었다. 예를 들면, 수정초안 제4조의 2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재인 선정기관을 PCA 사무총장으로 통일할 경우 투자자-국가 분쟁 해결 방식에 유리할 것이라는 점, 제25조 제1항의 2와 같이 규정하면 투자자-국가 중재사건에서 정부 공무원들도 증언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점, 1976년 중재규칙을 개정하면서 모델중재법에서와 같이 사전명령에 관한 규정

139) 제47차 WGII 보고서 para. 121.

140) A/CN.9/WG.II/WP.149, para. 79.

141) A/CN.9/WG.II/WP.149, para. 80.

142) 제40차 UNCITRAL 본회의(2007.6, 비엔나) 보고서, A/62/17(Part 1), para. 172.

143) 제46차 WGII 보고서, para. 61; 자세한 사항은 IISD가 배포한 다음 자료를 참조하십시오. (http://www.iisd.org/pdf/2008/investment_revising_uncitral_arbitration_dec.pdf 2008년 1월 30일 검색)

을 들 경우, 투자자-국가 분쟁과 관련해서 국가들이 개정될 1976년 중재규칙을 활용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 제31조 제1항에서 중재인들 간에 다수결이 형성되지 않을 때의 장중재인 단독으로 의사 결정하도록 규정 하면 투자자-국가 분쟁해결방식과 관련해서 국가들이 개정될 1976년 중재규칙을 덜 활용할 것이라는 점, 제32조 제5항에서 1976년 중재규칙이 활용된 투자자-국가 중재에서 공익 차원에서 중재판정을 공개하도록 할 것인지의 여부를 논의하기로 한 점, 제33조 제3항에서 투자자-국가 분쟁과 같이 반드시 계약을 근거로 해서 분쟁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도 1976년 중재규칙이 넓게 적용될 수 있도록 “terms”와 “usages of trade”에 “any”를 붙여서 제3항을 수정하자는 점이 언급된 바 있다.

WG II는 제45차 회의에서 분쟁의 대상과 상관없이 여러 가지 유형의 분쟁에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1976년 중재규칙을 개정하는데 많은 지지가 있었던 점에 주목하였다.¹⁴⁴⁾ WG II는 투자자-국가 중재를 포함하여 여러 분야에서 중재실무가 발전하고 있고, 아직 모든 중재에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규정이 확정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1976년 중재규칙 개정 시 특별규정을 고려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는 지적에 따라서 현재의 개정작업을 종료한 후 다시 이 문제를 논의하기로 합의하였다.¹⁴⁵⁾

아직 WG II에서 개정작업이 진행 중에 있기에 단정짓기는 어렵지만, 제1회독을 마친 현재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개정규칙에서 찾을 수 있다. 첫째, 뉴욕협약에서 사용한 구절과 일치시키거나, 서면성 완화와 같이 뉴욕협약과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논의한 사항을 반영하고 있다. 또한 국제사법관련 국제협약의 발전 및 UNCITRAL에서 합의하여 채택한 협약의 구절도 활용하고 있다. 예컨대, UNCITRAL이 채택한 전자상거래 관련 협약 문서에서 새로운 통신수단을 포섭하기 위하여 사용한 구절을 받아들여 규정하고 있다. 둘째, 개정규칙에서는 여러 곳에서 모델중재법에서 사용한 구절과 일치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특히 임시적 처분과 관련하여 최근 새로이 개정된 모델중재법 규정을 일부 받아들이고 있다. 이외에도 국제적으로 성가가 높은 국제중재기관의 중재규칙과도 유사한 규정을 두고 있다. 셋째, 개정규칙에서는 중재판정부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절차 운영을 위하여 여러 규정을 신설하고 있다. 예컨대, 다수당사자 중재와 같이 1976년 중재규칙에서 규정하지 않았던 사항을 새로이 규정하거나, 중재대상 범위를 넓히기 위하여 비계약적 성격의 분쟁도 포섭하도록 함으로써 국가가 결부된 투자분쟁을 다룰 수 있도록 하거나, 신청인의 중재통지에 대해서 피신청인이 자신의 입장을 피력하도록 함으로써 양 당사자의 권리행사간에 균형이 이루어지도록 규정을 신설하였다. 넷째, 개정규칙에서는 1976년 중재규칙의 기존 규정의 제목을 변경하거나, 본문 내용을 단순화함으로써 명확성을 기하고, 중재인의 수, 선정방식, 중재인 선정기관의 관여와 같이 서로 관련된 규정들이 연계될 수 있도록 조문을 재배열하고, 이 때, 규정을 재배치함으로써 중복되는 규정은 삭제하고 있다.

144) 제45차 WGII 보고서, paras. 18-19.

145) 제46차 WGII 보고서, para. 62.

UNCITRAL의 여러 활동 중 중재관련 논의는 전 세계적으로 많은 관심을 끌고 있다. 특히, 아시아 지역 국가들이 제3자적 분쟁해결방식 중의 하나로써 국제중재에 적극 관심을 보이며, 이들 지역에 기반을 둔 중재기관들과 함께 WG II의 중재관련 회의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현재, WG II는 제45차 회의부터 제47차 회의까지 1976년 중재규칙 개정초안에 대한 제1회독을 거의 마무리 한 후, 사무국이 마련한 수정초안을 근거로 제2회독을 준비하고 있다. 2009년 여름 본 회의에서 채택될 1976년 중재규칙 개정사항이 국제중재의 발전에 많이 도움이 될 것이다.

참 고 문 헌

대한상사중재원 중재규칙 및 국제중재규칙.

대한상사중재원, “국제중재규칙제정 - 국제중재규칙 주요 내용”, 『중재』, 제322호, 대한상사중재원, 2006.

대한상사중재원, “특집 - 국제중재활성화(중재규칙 개정방향)”, 『중재』, 제318호, 대한상사중재원, 2005.

이강빈, “UNCITRAL 중재규칙 개정안의 내용과 쟁점에 관한 연구”, 『중재연구』, 제17권 제2호, 한국중재학회, 2007.

채완병, “중재규칙 및 중재사무처리규정 개정 내용”, 『중재』, 제315호, 대한상사중재원, 2005.
UNCITRAL Arbitration Rules.

Fifty-ninth Session, Supplement No. 17 (A/59/17).

Official Records of the General Assembly, Sixtieth Session, Supplement No. 17 (A/60/17).

Official Records of the General Assembly, Sixty-first Session, Supplement No. 17 (A/61/17).
Fortieth session (A/62/17 (Part I)).

Reports of Working Group II (Arbitration) on the work of its forty-fifth session (A/CN.9/614).

Reports of Working Group II (Arbitration) on the work of its forty-sixth session (A/CN.9/619).

Reports of Working Group II (Arbitration) on the work of its forty-seventh session (A/CN.9/641).

Settlement of commercial disputes: Revision of the UNCITRAL Arbitration Rules(A/CN.9/WG.II/WP.143 and A/CN.9/WG.II/WP.143/Add.1).

Settlement of commercial disputes: Revision of the UNCITRAL Arbitration Rules: note by the Secretariat (A/CN.9/WG.II/WP.145 and A/CN.9/WG.II/WP.145/Add.1).

Settlement of commercial disputes: Revision of the UNCITRAL Arbitration Rules(A/CN.9/WG.II/WP.147 and A/CN.9/WG.II/WP.147/Corr.1).

Settlement of commercial disputes: Revision of the UNCITRAL Arbitration Rules (A/CN.9/WG.II/WP.149).

ABSTRACT

Analysis of Deliberations by UNCITRAL Working Group on the Draft Revised Version of UNCITRAL Arbitration Rules

Pyoung-Keun Kang

At its thirty-ninth session(New York, 19 June - 7 July 2006), United Nations Commission on International Trade Law(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Commission) agreed to give priority to the topic of revising the UNCITRAL Arbitration Rules.

From the forty-fifth through the forty-seventh session, the Working Group checked various issues based on the draft revised version of the UNCITRAL Arbitration Rules prepared by the Secretariat. At its forty-eighth session, the Working Group is going to finish its first reading of articles 38 to 41 of the draft revised version of the UNCITRAL Arbitration Rules, and to commence its second reading of the draft revised version of UNCITRAL Arbitration Rules.

Korea is keen on enticing foreign direct investment into its territory. From the 1960s, Korea has concluded more than 80 BITs. Korea is making efforts to conclude FTAs with its trading partners. As of January, 2008, 3 FTAs have taken into effect with respect to Korea. According to provisions on dispute settlement found in such BITs and FTAs involving Korea, the Rules can be chosen for Investor-State Arbitration. Furthermore, the Rules is followed by the arbitration rules for domestic and international arbitrations administered by the Korean Commercial Arbitration Board.

If the Commission adopts the revised version of UNCITRAL Arbitration Rules, the Rules will be able to give impact on the arbitration law and practice around the world of arbitration. That is the reason why we should keep attention to the development of the deliberations of the Working Group.

Key Words : UNCITRAL, Arbitration Rules, Investor-State Arbitration, UNCITRAL Model Law, Costs of Arbitration